



서울사무소 운영방향

김재우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총괄과 과장

1. 들어가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창립 25년만에 사건처리 전 담기구로서 서울사무소를 설립하였다. 정책기능은 본부에서, 사건기능은 서울사무소에서 집중함으로써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는 사건심사와 관련하여 커다란 환경변화라고 할 수 있다. 종래에는 정책기능과 사건기능을 함께 수행하다 보니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관련 당사자들은 장기간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놓이곤 했다. 그러나, 신고 사건기능이 서울사무소로 일원화됨으로써 사건처리가 신속해지고 관련 당사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사무소는 설립된 후 한 달째 되는 1. 19일 개소식을 개최한 이후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였다. 지난 2005. 12. 19일 이후 약 2개월 동안 서울사무소는 본부로부터 이관 받은 사건과 새롭게 접수되는 사건의 처리, 본부와의 업무분장 기준 마련, 개소식 개최, '06년 업무계획 수립 등에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왔다.

이제 서울사무소는 개소 초기에 조직을 안정적으로 정비하고 본격적으로 사건처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아래에서는 서울사무소의 주요기능과 개소후 2개월간의 사건처리 실적을 간략히 살펴본 후, 사건처리 효율화 방안 등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서울사무소 개요

서울사무소는 서울사무소장 이하 총괄과, 경쟁과, 소비자과, 건설하도급과, 제조하도급과의 5개과, 57명 정원으로 설립되었다. 서울, 경기, 강원 소재 사업자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부터, 표시광고법 위반사건,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신고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다만, 카르텔, 기업결합, 약관, 부당내부거래 신고사건, 언론사 본사 조사 건은 해당 본부에서 처리하게 된다.

〈표 1〉 서울사무소 조직구성 및 주요기능

담당과	담당사건	관련 법령
총괄과	① 공공사업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②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	공정거래법
경쟁과	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불공정거래행위 포함) ②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사건 ③ 가맹사업법 위반사건 ④ 대규모소매점업고시, 경품고시 위반사건 ⑤ 신문판매고시 위반사건	공정거래법, 대규모소매점업고시, 경품고시, 신문판매고시, 가맹사업법
소비자과	① 표시광고법 위반사건 ②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사건 ③ 방문판매법 위반사건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법
건설하도급과	① 건설업 · 전기공사업 · 전기통신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관련 하도급 위반사건	하도급법
제조하도급과	① 제조 · 용역 및 수리위탁 분야 관련 하도급 위반사건	하도급법



서울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신고사건을 전담 처리하되 신고사건 조사과정에서 추가 인지한 법 위반행위도 처리하게 되며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도 일부 시행한다. 서울사무소의 조직과 주요기능은 <표 1>과 같다.

3. 서울사무소 개소후 2개월 사건처리 실적

서울사무소는 1년 이내에 “고객만족도 제1의 정부기관”이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업무를 시작하였다. 서울사무소의 고객은 대부분 신고사건과 관련된 사업자, 소비자 등이므로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은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처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울사무소는 '06. 2. 24일 기준, 이관사건과 신규접수 사건을 합하여 총 570건을 접수하여, 247건을 처리하고 320여건을 보유중에 있다. 장기간 처리되지 않았던 본부 이관사건을 중점적으로 처리하여 본부 이관사건의 약 80% 이상을 처리하였다.

종래 우리 위원회는 매년 약 1,200여건의 신고사건을 처리하여 왔으며, '05년 한해만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약 135일 정도로 당사자에게 처리결과가 통보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서울사무소 개소 이후 사건처리도 신속해져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종래에 비해 약 70여일 정도 처리기간을 단축하였다.

법 위반행위 유형별로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가 가장 많아 194건이 접수되어 79건이 처리되었으며, 다음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가 166건이 접수되어 이 중 87건이 처리되었다.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사건은 세 번째로 많은 101건이 접수되어 현재('06. 2. 24일)까지 46건이 처리되었다.

향후 서울사무소는 사건처리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처리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무혐의 등의 심사관

<표 2> 신고사건처리 현황 (조치일 기준)

접수	처리 완료	보유	
		(수락여부조회 등 위원회상정사건*)	
계	570	247	323 (43*)
본부이관	303	201	102 (43*)
신규접수	267	46	221 (-)

* 보유중인 사건 중 43건은 사실상 위원회 상정단계로 서울사무소에서 심사는 완료된 상태(수락여부 조회중 24건, 위원회 상정 15건, 의결서 작성 4건)

<표 3> 사건처리기간 단축현황

구분	'05년 전체 평균 처리일수		'06. 2. 24. 현재 평균 처리일수		기간단축 정도	
	경고 이하	경고 이하	경고 이하	경고 이하	경고 이하	경고 이하
불공정거래 (신문포함)	135일	117일	64일	64일	△71일	△62
불공정하도급	73일	60일	51일	51일	△22일	△19
표시광고법 위반	156일	142일	83일	83일	△73일	△61
가맹사업법 위반	99일	92일	64일	64일	△35일	△65

* 시정명령 사건과 같이 장기간의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 향후 처리될 것을 감안하면 기간 단축정도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감안더라도 사건처리기간은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전망



〈표 4〉 서울사무소 사건처리 현황

(2005.12.19~2006.2.24. 기준)

	접수합계	처리합계	보유합계
불공정거래	194	79	115
하도급거래	166	87	79
표시광고	101	46	55
가맹사업거래	65	25	40
기타 행위	44	11	33
합 계	570	247	323

*'06. 2. 24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건 323건에는 위원회 상정단계인 43건이 포함됨.

전결 사건은 보다 간소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쟁점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공정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4. 사건처리 효율화 방안

서울사무소는 연간 위원회 신고사건의 약 70%인 약 850여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사무소 경쟁과는 종래 경쟁국의 3개파에서 처리하던 신고사건을 처리하게 되며, 소비자파는 소비자보호국에서 처리하던 신고사건 중 약관을 제외한 사건을 모두 처리하게 된다. 인력대비 사건처리 부담은 다소 큰 것이 사실이나, 서울사무소는 이를 효율적인 사건처리 방식으로 극복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서울사무소는 사건검토 과정을 표준화한 「사건처리 표준검토양식」(이하 표준검토양식이라 함)을 활용해 사건검토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사건담당자는 사건과 관련된 위법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 관련 심결례 및 판례를 찾아봐야 하는 수고를 겪어야 한다. 표준검토양식은 이러한 사건담당자의 수고를 덜자는 취지에서 고안된 양식이다.

즉, 표준검토양식은 사건처리를 위해 담당자가 필요로 하는 법령정보, 유사 심결례, 관련 판례를 검토단계별로 하이퍼링크로 연결하여 줌으로써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대폭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건담당자로 하여금 모든 필요한 검토사항을 빠짐없이 검토하게끔 하므로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여러번 수정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해주며, 보고받는 관리자 입장에서도 사건담당 직원의 검토를 종합적으로 한눈에 평가하고 사건의 쟁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사건 결재가 보다 신속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사무소는 현재 표준검토양식 초안을 법 위반 유형별로 작성하여 실제 사건에 적용하고 있다. 실제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표준검토양식의 문제점들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원칙적으로 심사관 전결사건(무혐의, 경고사건 등)은 별도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표준검토양식 작성으로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표준검토양식 활용이 잘 정착되게 되면 국민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보다 정교한 분석을 요하는 중요사건들에 업무역량을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서울사무소는 사건처리 전과정에 대한 사건담당자 및 관리자의 점검을 강화하고 사건처리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실행함으로써 사건처리 담당자들이 사건처리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고 사건처리에 전념할 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사무소는 실시간으로 사건처리 전과정을 점검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사건진행 상황 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건처리 실시간 상황판」을 개설하였다. 사건처리 상황판은 종래의 사건처리시스템이 제공하지 못했던 사건 처리 관련 정보를 관리자 및 사건처리 담당자에게 제공한다.

즉, 서울사무소 전체·과·사건담당자별 사건 접수·처리·미결사건현황에서부터 개별사건의



상세내역 정보까지 한번의 작업으로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 위반 유형별·업종별 사건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사건 및 시장동향 분석을 용이하게 해준다.

아울러, 서울사무소는 개인별 사건처리 실적을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건처리 성과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사건처리 건수, 신속화 정도, 사건의 중요성 등의 평가기준을 계량 모형화하여 과별·직원별 사건처리 성과를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사건 처리에 대한 직원별 자기점검을 가능하게 하여 사건처리의 신속성 및 성과에 대한 동기부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서울사무소는 사건처리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토론하고 학습하는 조직문화를 조장하고, 공정거래 관련 전문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사건처리를 통해 습득하게 되는 공정거래 관련 전문지식이나 노하우가 조직 구성원 개인에게만 축적되게 되는 경우, 그 개인이 조직을 떠나고 나면 새로운 직원이 동일한 노력이나 그 이상의 노력으로 동일한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이는 조직 전체적으로 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서울사무소는 조직이 학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사무소는 사건처리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를 신규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사건처리 담당자가 사건처리 Committee를 구성하여 경험 많은 직원의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기미 결사건 처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쟁점이 복잡하고 어려워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건을 사건담당자 개인이 홀로 처리하는 방식에서 조직 전체가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물론 사건처리 Committee나 장기미결 사건처리위원회 참여 실적은 사건처리 성과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직원들의 자발적인

지식공유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사무소는 공정거래법, 방문판매법 등 위원회 관련 전문교육도 실시하여 사건처리 관련 직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건을 처리하면서 습득하게 되는 시장에 대한 동향이나 공정거래 관련 제도의 개선사항 등 정책적인 사항도 적극 분석하여 본부·팀과의 연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사건기능과 정책기능이 전문화 되면서도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5. 맷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처리기능과 정책기능을 이원화한 취지는 두 가지 기능이 별개의 기능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상승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건처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이다. 사건처리를 잘 해야 시장상황을 잘 알 수 있고, 시장 실패가 제도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독점적 사업자의 행태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사건처리는 경쟁정책 운영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서울사무소는 사건처리를 전담하는 기구로서 향후 사건처리 과정에서 인지하는 시장동향, 제도적 개선점들을 적극 발굴하여 관련 본부에 피드백함으로써 사건처리를 통해 정책 아이디어가 발굴되고 시장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향후 행정복합도시로 주요 공공기관의 이전이 완료되고 나면 서울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서울사무소는 시장의 중심이며, 분권화된 지방의 중심에서 시장의 규칙을 정하고 반칙을 범하는 자를 적발하여 처벌함으로써 「규칙을 지키는 것이 규칙을 위반하는 것보다 더 이익이 된다」는 인식과 올바른 경쟁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 1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05. 12. 29. 공포, 법률 제7794호)에 따라 동 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하였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중요정보제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간사에 관한 규정 및 협의회 위원회 위원의 임기, 소비자, 관계 사업자 등의 의견청취 등 중요정보 고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중요정보제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 「표시광고실증 운영에 관한 고시」의 근거규정 마련

실증자료 제출기간 단축, 실증자료 미제출시 표시광고 중지명령 등 표시광고실증제도의 운영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고시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고시 제정을 위해서는 그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 과징금부과기준 매출액을 법위반 관련 매출액으로 한정

과징금부과기준 매출액을 법위반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이 아니라 법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으로 규정하였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본지 부록(150면 이하) 참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정부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월 22일 확정·공포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에스크로* 사업자의 범위, 결제대금예치제가 면제되는 소액거래, 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등 결제대금예치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에스크로 사업자의 범위를 은행, 신용카드사,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과 상법상 회사, 또

는 민법상 법인으로 공정위가 고시하는 자본금 또는 기본자산·인력 및 물적시설·재무건전성을 충족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금융기관에 결제대금을 보관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규정하였고 ▶결제대금예치제가 면제되는 소액거래를 10만원 미만의 거래로 하였으며 ▶예치된 결제대금은 에스크로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결제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정당한 사유의 제시없이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화 등이 소비자에게 배송 완료된 날부터 3영업일 이상이 지난 후에는



결제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결제대금예치제(ESCROW) : 공신력있는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본지 부록 (152면 이하) 참조.

[결제대금예치 사업자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의결]

공정거래위원회는 「결제대금예치 사업자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2월 28일 의결하였다.

동 고시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신판매업 분야의 결제대금예치제(Escrow)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아닌 에스크로 사업자의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결제대금예치 사업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고시는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결제대금예치제의 운용 및 관련

분쟁 · 불만처리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두고 있을 것 ▶결제대금예치제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을 것 ▶자기자본 또는 기본재산 대비 부채총액(지불결제대행, 결제대금예치 등 계약종결을 위한 최종 결제를 위해 해당사업자가 일시 보관하는 금액은 제외)의 비율이 200% 이하일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 가맹점 창업희망자에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06. 3. 14. 입법예고 하였으며,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금년 5월까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동 법률의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서면으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가맹희망자 규정을 개정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당해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공개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숙고기간을 가맹금 지급 또는 가맹계약 체결 5일 전에서 14일 전으로 연장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가맹본부에 의한 가맹계약 종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 ▶가맹점사업자들의 단체구성 및 참여를 이유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벌칙 부과 ▶현재 가맹금 반환 대상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허위 · 과장 정보 제공행위 외에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도 추가하여 이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 장치 마련 ▶가맹계약서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민법상 법정 해지사유(이행지체 · 불능)가 발생하더라도 가맹사업법상의

공정위 업무활동



계약해지 절차를 거치도록 보완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수정된 내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 ▶가맹희망자에게는 개설하려는 가맹점에 대한 상권분석 내용(수익상황 등)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가맹본부가 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였다.

둘째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1회 이상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완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통해 사전에 알린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에서 직영점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등 가맹본부의 권리행사 제한을 완화하였다.

셋째 ▶상담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영세한 가맹점사업자가 저렴하게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사의 업무범위 확대 ▶상담은 국가자격증 취득 유무와 관련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으므로 명칭을 '가맹거래사'로 변경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제도를 활성화하였다.

넷째 ▶협의회의 전체회의 체제(9인 위원)를 소회의(공익대표 1인 포함 3인 위원) 중심으로 개편하여, 분쟁조정의 효율성 및 충실성 제고 ▶가맹사업 분야에 식견이 높은 다양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등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그 밖에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일반 경쟁법인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경쟁법 체계를 단일화하였으며, '가맹사업', '가맹점운영권', '가맹금' 정의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가맹거래사'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2006. 1·2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

공정위는 2006년 1·2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의거하여 변동 내용을 당해 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 제한 등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06. 1월중 계열사 변동 개요>

기업집단	2006. 1. 2.	편 입				제 외							증감	2006. 2. 1.
		회사 설립	지분 취득	기타	계	합병	지분 매각	청산 종결	친족 분리	지정 제외	기타	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11개)	305	1	1	-	2	2	1	-	-	-	-	3	△1	304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 (55개)	1,006	5	5	-	10	5	3	-	-	-	-	8	2	1,008

공정위 업무활동



〈2006. 1월중 계열사 변동 내용〉

◆ 편입 : 10개사(회사설립 : 5, 지분취득 : 5)

◆ 제외 : 8개사(지분매각 : 3, 합병 : 5)

기업 집단	편 입			제 외		
	회사명	영위업종	시유	회사명	영위업종	시유
현대 자동차	(주)록인	골프장업	지분 취득	-	-	-
에스 케이	에스케이씨 미디어(주)	자기기록 필름 및 디스크 제조업	회사 설립	-	-	-
엘에스	엘에스글로벌인 코퍼레이티드(주)	금속 및 비금속 합금 구매업		-	-	-
대림	새한마텍(주)	콘크리트관련 제품제조업	지분 취득	-	-	-
대우 건설	우리자산관리(주)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업	회사 설립	남해터미널개발(주)	주차터미널사업	지분 매각
				청주자원화(주)	음식물 쓰레기 중간 처리	지분 매각
대우조선 해양	제이알종합건설(주)	토목건축업	지분 취득	-	-	-
현대 백화점	(주)호텔현대경포대	관광호텔업	회사 설립	-	-	-
태광 산업	(주)티브로드	경영자문업	회사 설립	-	-	-
대한 전선	한국렌탈(주)	렌탈사업	지분 취득	-	-	-
	대한테크렌(주)	태양광발전 제조 판매	지분 취득	-	-	-
엘지	-	-	-	(주)엘지대산유화	화학공장의 정비 · 운영업	합병
				(주)곤지암레저	운동설비 운영업	합병
한화	-	-	-	동일석유(주)	석유제품의 판매	지분 매각
동국 제강	-	-	-	(주)유일테크	전자부품 제조	합병
코오롱	-	-	-	유케이(주)	부동산개발	합병
에스티 엑스	-	-	-	서해에너지(주)	에너지의 생산 · 수송	합병

공정위 업무활동



〈2006. 2월중 계열사 변동 개요〉

기업집단	2006. 2. 1.	편 입				제 외							증감	2006. 3. 2.
		회사 설립	지분 취득	기타	계	합병	지분 매각	청산 종결	친족 분리	지정 제외	기타	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11개)	304	-	1	1	2	2	-	-	-	-	-	2	-	304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55개)	1,008	3	4	1	8	3	2	-	-	-	2	7	1	1,009

〈2006. 2월중 계열사 변동 내용〉

◆ 편입 : 8개사(회사설립 : 3, 지분취득 : 4, 기타 : 1)

◆ 제외 : 7개사(지분매각 : 2, 합병 : 3, 기타 : 2)

기업 집 단	편 입			제 외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에 스 케 이	에스케이 인천정유(주)	석유류 도매업	지분취득	-	-	-
금 호 아시아나	서울고속버스 터미널(주)	자동차 정류장사업	기타	-	-	-
효 성	거목농산(주)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회사설립	-	-	-
한 솔	이씨비스(주)	환경사업	회사설립	-	-	-
태 광 산	피데스증권증개(주)	증권업	지분취득	-	-	-
	쌍용화재 해상보험(주)	보험업	지분취득			
	(주)티브로드폭스 코리아	방송채널사용사업	회사설립			
동양화학	군장에너지(주)	열병합발전	지분취득	-	-	-
현 대 자 동 차	-	-	-	(주)본텍	자동차부품 제조, 판매업	합병
엘 지	-	-	-	(주)테카스	텔레마케팅서비스업	합병
하나로 텔 레 콤	-	-	-	(주)두루넷	전기통신 회선임대	합병
이 랜 드	-	-	-	산내들축산(주)	도소매업	지분매각
				(주)마블러스	도소매업	기타
				(주)제이원	도소매업	기타
하이트 맥 주	-	-	-	제이알종합건설(주)	건설업	지분매각